

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 
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 검 토 보 고 서



**충청북도의회**  
**산업경제위원회**

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 
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가. 제출일자 : 2023년 10월 24일

나. 회부일자 : 2023년 10월 25일

3. 제안이유

- 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등에 관한 상위법령 제·개정 사항을 반영하고, 기금으로 운영되는 자금의 종류와 그 지원 대상자를 보다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, 기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

4. 주요내용

- 인용법령 제·개정 등에 따른 목적규정, 용어의 정의 등 관련 조문 정비(안 제1조, 제2조, 제4조, 제5조 및 제6조)
-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지원되는 자금의 종류, 지원대상자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(안 제5조, 제6조 및 제9조)

## 5. 검토의견 (산업경제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민복기)

### 가. 제출배경

- 2022. 12. 12. 충청북도 종합감사에서 「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」 개정 업무 소홀이 지적됨
- 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·운용의 근거가 되는 「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」, 「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」 등 7개 상위법령의 제·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자 함

### 나. 주요내용

- 인용법령 제·개정\* 등에 따른 목적 규정, 용어의 정의 등 관련 조문 정비(안 제1조, 제2조, 제4조, 제5조 및 제6조)

\* 「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」 → 「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」,  
「중소기업창업지원법」 → 「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」

-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조성재원, 관리·운용, 지원 대상, 사용 등이 인용법령과 일치하도록 구체적으로 규정(안 제5조, 제6조, 제9조)

(예) 시장정비사업자 → 시장정비사업시행자, 기업진흥원 → 충청북도기업진흥원,  
중소기업투자모태조합 → 벤처투자모태조합

- 안 제2조제4호의 경우 현행법 기준으로 제출된 개정안이 타당하나 2023. 6. 30. 개정, 2023. 12. 31. 시행예정인 벤처투자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라 향후 다시 정비되어야 할 것임
- 안 제2조제18호 및 안 제5조제2항제9호는 인용법령 제·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와 상관없는 신설 규정으로 신설하게 된 이유와 향후 운영에 따른 문제점이 없는지 설명이 필요함

#### 다. 종합의견

- 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종합감사에 지적된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인용법령 제·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의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되나 종합감사 지적 후 신속히 조치하지 않은 부분은 문제가 있음
- 일부 조문의 경우 인용법령 제·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의 범위를 벗어난 신설조항으로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함